

2024. 11월
남양주시 일원

남양주시체육회

종목단체 회장선거

진흥팀

Contents

종목단체 선거 안내

- 01 회장선거 추진개요
- 02 회장선거 일정(안)
- 03 권고(안) 주요내용
- 04 종목단체 우선처리 사항

01 회장선거 추진개요

2025년 종목단체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실시

- ◇ 임원임기 : 2025년 종목단체 정기총회 전날까지
- ◇ 회장선거 : 임기만료일 전 10일 까지
- ◇ 추진근거 : 종목단체규정, 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(안)

일 시	내 용	비고
24. 11월	이사회 개최 (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, 25년 종목별 정기총회 개최일 결정)	-
24. 12. 4.(수)	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 제출(현 회장 출마 시) (정기총회 50일 전)	-
24. 12. 14.(토)	선거운영위원회 구성 (정기총회 40일 전)	현 회장 출마시 직무대행자가 구성
25. 1. 13.(월)	회장 선거일 (정기총회 10일 전)	선거 종료 후 당선증 수여
25. 1. 24.(금) 이내	종목단체 정기총회 개최 완료	2. 7.(금) 이내 인준서류 제출

02 권고(안) 주요내용

자구수정

- ◇ 선거관리위원회 → **선거운영위원회**

주요일정

- ◇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: 회장이 재 입후보를 희망할 시, 후보자등록의사표명서 제출(제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정지)
- ◇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: 선거운영위원회 구성, 동호인클럽 임원 명단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
- ◇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: 선거완료

02 권고(안) 주요내용

선거운영위원회 설치

- ◇ 구성인원 : 7명 이상 11명 이하(협회와 관계없는 위원이 3분의 2이상)
- ◇ 설치방법 :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(직무대행)이 위촉 * 이사회 개최 시 임원들 추천

선거인 요건

- ◇ (공통) 만 18세 이상, 선거일 당시 선거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.
- ◇ (임원) 체육단체 임원(" 재임 " 하고 있어야 함)
- ◇ (선수, 지도자, 심판, 동호인) 체육회등록시스템 등록자
 - 등록기한 :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선거일 전30일(임기만료일 전 40일)까지 등록되어 있을 것
 - 단체별 자체 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의 경우 포함 가능
 - 남양주시체육회 2024년 정기(임시)총회 결과보고 시 제출된 작성 된 명단 가능(별도 자료 불가)
 - * 2024년 11월 29일까지 정기총회 미 제출 종목단체 체육회 제출
 - 선거운영위원회에서 명단 자료에 대한 자체 검증 진행
- ◇ 선거인 대상자는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수(동호인클럽 → 종목단체 → 선거운영위원회)

02 권고(안) 주요내용

선거인단 구성

- ◇ (인원) 17명 이상 400명 이하 구성 * 최소 3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
- ◇ (비율) 선거인단 직군별 비율이 각 10% ~ 40%를 유지 * 직군별 비율 유지 어려울 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예외 심의하여 결정
- ◇ (구성) 선거인단 구성(안) * 선거일 전 30일 까지 등록시스템 내 등록인원 기준 또는 체육회에 제출된 명단
 -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최소 3개 직군 5명 이상 구성(3개 직군 5명 예시 : 회장 1명, 임원 1명, 동호인 3명)

구 분	내 용	비고
동호인클럽의 회장	1명	
동호인클럽의 임원	1명	
동호인클럽의 지도자(전문 1, 생활 1)	2명	
동호인클럽의 선수	1명	
동호인클럽의 심판	1명	
동호인클럽의 동호인	1명 ~ 5명	

02 권고(안) 주요내용

(예비)선거인 추천 / 명부 작성

- ◇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 선거인 수에 따라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
- ◇ 선거인 추천 시 동호인클럽에서 별도의 추천을 하지 않고,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

회장 후보자의 자격

- ◇ 단체별 정관에 명시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◇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(안) 제13조(후보자의 자격)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사임 필요

02 권고(안) 주요내용

체육단체 임직원의 종목단체장 선거 입후보 시 신분변화

구 분		내 용	비고
회장(본인 단체)		직무대행	부회장이 직무대행
회장 외 임원(본인 단체)		직위 유지, 선거와 관련한 의결 제한	-
직원(본인 단체)		사임	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
다른 종목단체 임직원		사임	후보자등록 시작 전일까지
대한체육회 임직원		사임	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
시도체육회 임직원		사임	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
동호인 클럽	회장	직무대행	부회장이 직무대행
	회장 외 임원	직위 유지, 선거와 관련한 의결 제한	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
	직원	사임	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

02 권고(안) 주요내용

체육단체 임직원의 종목단체장 선거 입후보 시 신분변화(예시)

- ◇ (본인단체) 대한육상연맹회장이 대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재 입후보 시,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고 **직무정지**
- ◇ (타 단체) 대한육상연맹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 시,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**사임**
- ◇ (상위→하위) 대한체육회 임직원이 대한육상연맹회장 선거에 출마 시, 대한육상연맹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 **사임**
- ◇ (하위→상위) 서울특별시육상연맹 회장이 대한육상연맹회장 선거에 출마 시,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고 **직무정지**
- ◇ (시도→종목) 서울특별시체육회 임직원이 대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, 대한육상연맹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 **사임**

02 권고(안) 주요내용

체육단체 임직원의 종목단체장 선거 입후보 시 신분변화

- ◇ 회장(본인단체) 선거 출마에 따른 주요 행정절차
 - 연임 해당여부 사전 파악 및 사임 또는 직무정지에 따라 직무대행자 인준 필요
 - 사임 또는 직무정지에 따라 회장선거 결과 후(선거일 후) 신분 변화

구 분	당 선	비고
사임	정기총회일	부회장이 직무대행
직무정지	당선일로부터 직무정지 해제	당선공고일로부터 정기총회일 전날까지

기탁금

- ◇ 단체의 사정에 따라 반환비율 100분의 25범위까지 상향가능

구 분	내 용	비고
100분의 15 이상	전액 반환	30일 이내 반환
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미만	기탁금의 100분의 50 반환	

- ◇ 공직선거법 제56조(기탁금)에 따른 공직자별 기탁금 등
 - 대통령(3억), 국회의원(1,500만원), 시도의회의원(300만원), 시도지사(5천만원), 자치구시군장(1천만원)
자치구시군구의원(200만원), 대한체육회장(7천만원), 시도체육회장(2천만원), 시군구체육회장(1천만원)

02 권고(안) 주요내용

단일 후보 입후보 시

- ◇ 투표없이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격사유를 심사 후 선거일에 당선인 결정 및 공고

그 밖의 사항

- ◇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선거운영위원회 결정

03 회장선거 일정(안)

일 자	내 용	비고
12. 4.(수)	후보자 등록의사 제출 (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)	
12. 14.(토)	선거운영위원회 구성 (임기만료일 전 40일 까지) * 이사회 개최 시 25년 정기총회 개최일, 회장선거규정 개정,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안건 승인 * 회장 선거 규정 개정 후 체육회 승인 필요	제1차 선거운영위원회
12.14.(토)	동호인클럽 명단 및 개인정보동의서 취합 (선거일 전 30일 까지)	
12.24.(화)	단체별 선거인수 배정통보 (선거일 전 20일 까지)	제2차 선거운영위원회
12.29.(일)	선거일 공고 및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(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)	
12.30(월) ~ 1.1.(수)	선거인 명부 작성 (선거일 공고한 다음날 부터 3일간)	제3차 선거운영위원회
1.1.(수)	선거인 명부 통보 (선거인 명부 작성 후 즉시)	
1.2.(목) ~ 1.4.(토)	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(3일간)	
1.4.(토) ~ 1.5.(일)	후보자 등록기간(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) 및 공고 (등록즉시)	
1.5.(일)	선거인 명부 확정 (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)	제4차 선거운영위원회
1.6.(월)	선거인 명부 사본 신청	
1.6.(월) ~ 1.12.(화)	선거운동기간 (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)	
1.13.(월)	선거일 (임기만료일 전 10일 까지)	제5차 선거운영위원회
1.23.(목)	임기만료일 (정기총회일 전일)	
1.24.(금)	정기총회일	

04 종목단체 우선 처리 사항

우선 처리 사항

◇ 현 종목단체 회장 연임 여부 결정 필요

- 연임 시 : 후보자 등록의사서 제출 → 직무대행 선정(본회 승인 불필요) →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운영위원회 설치
- 미 연임 시 :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운영위원회 설치

◇ 종목단체 임시 이사회 개최

- 이사회 안건 상정(안) : 25년 정기총회일 결정,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, 선거운영위원회 설치
- * 원활한 회장 선거를 위하여 11월 이전 이사회 개최 필요

◇ 예비 선거인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 취합

- 동호인클럽의 대의원, 동호인 등 예비 선거인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선거일 30일전까지 취합하여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출
-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예비 선거인 후보에서 제외 하여야 함

Thank you